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축성 상품

- 보험차익(단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가 차감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관리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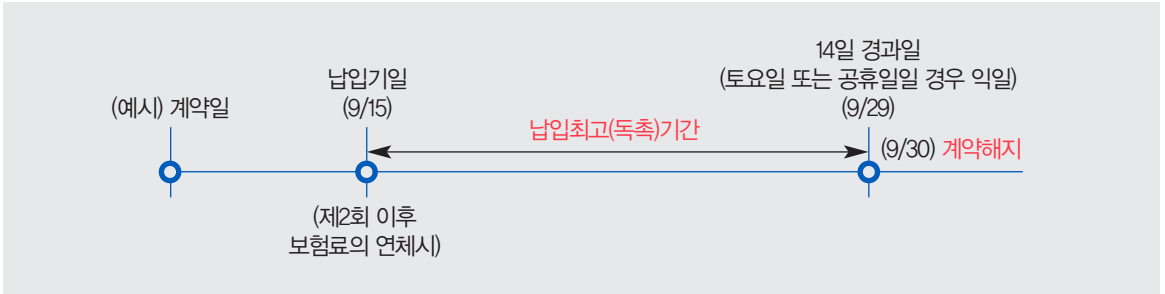
계약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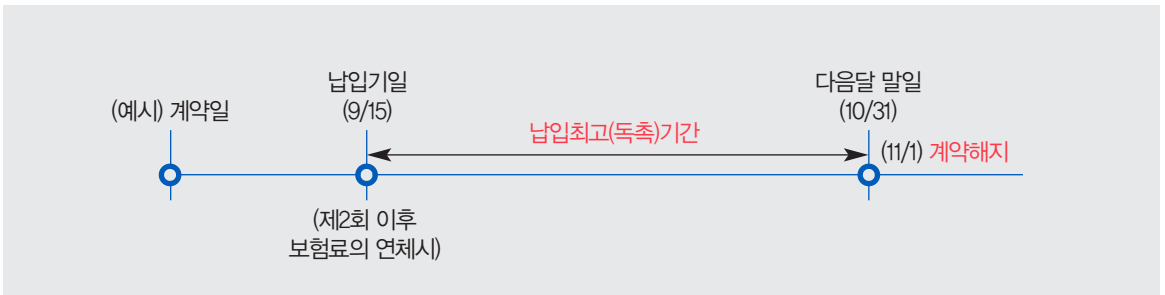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납입최고(독촉)기간을 14일로 정한 경우)]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실제 운용방법 예시)]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위험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부분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01.

무배당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약관 목차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07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16
제 1조 목적 07	제 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7
제 2조 용어의 정의 07	제 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7
제 2관 보험금의 지급09	제 28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17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09	제 29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18
제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09	제 30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19
제 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0	제 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9
제 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	제 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19
제 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0	제 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0
제 8조 보험금의 청구 10	제 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0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0	제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20
제 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	제 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20
제 11조 주소변경통지 11	제 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0
제 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2	제 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1
제 13조 대표자의 지정 12	제 38조 해지환급금 21
제 1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2	제 39조 보험계약대출 21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2	제 40조 배당금의 지급 21
제 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2	제 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21
제 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3	제 41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22
제 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	제 42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22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13	제 43조 펀드의 유형 22
제 18조 보험계약의 성립 13	제 4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23
제 19조 청약의 철회 14	제 45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24
제 20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4	제 46조 특별계정 죄수 및 기준가격 24
제 21조 약관고부 및 설명의무 등 14	제 47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4
제 22조 계약의 무효 15	제 48조 특별계정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4
제 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5	제 49조 특별계정의 폐지 25
제 24조 보험나이 등 16	
제 25조 계약의 소멸 16	

01.

무배당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약관 목차

제 8관	분쟁의 조정 등	25
제 50조	분쟁의 조정	25
제 51조	관할법원	25
제 52조	소멸시효	25
제 53조	약관의 해석	25
제 5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6
제 55조	보험금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26
제 5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6
제 57조	개인정보보호	26
제 58조	준거법	26
제 59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예외	26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7
〈별표2〉	재해분류표	40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9
〈별표4〉	관련 법규	37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마.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참고]

이 계약의 표준이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계약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08조 제1항(<별표 4> “관련 법규” 참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이라 함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사망보장기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사망보장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설명]

-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일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를 말합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성립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일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입니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합니다.

야.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5호 ‘가’목 및 ‘파’목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1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금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자. “사망보장기간”이라 함은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까지를 말하며, “연금지급기간”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말합니다.

차. “최소거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완료 후 연금지급개시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하며 5년납의 경우에는 5년, 5년납 이외(거치형 포함)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합니다.

카.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장기간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파.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거.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너.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더.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리.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며.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버. “월공제액”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부가보험료(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를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월공제액 공제 예시]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20일 월공제액 공제 (보험료가 납입일에 납입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공제액 공제

※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이내와 이후의 월공제액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본문참조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연금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연액을 지급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5조 [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연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5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매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2) 제 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의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기간 중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장기간에 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장기간에 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청구]

-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 회사는 제8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2) 회사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연액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4) 제3항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5)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후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 13 조 [대표자의 지정]

-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14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1) 계약자는 사망보장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신청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5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2)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은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4)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거지형은 일시납보험료의 30% 이상, 적립형은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적립형, 기본보험료 월 40만원(1구좌), 계약자적립금 700만원, 해지환급금 600만원일 경우
 ⇒ 600만원의 50%는 300만원이나,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만원 까지 인출 가능

- (5) 적립형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6)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 '카'목 및 '파'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단,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7)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청약의 철회]

-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2)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 사망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연금계약
 - 연금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연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3) 거치형의 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적립형의 보험료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가 10년 보증기간부 중신연금(정액형)으로 정해집니다.

제 21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2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일시납보험료에 한함)
 2. 보험료의 납입방법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적립형에 한함)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수익자 변경 사실을 모르는 회사가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등을 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를 상대로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감액신청일+제2영업일』부터 감액된 납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납입보험료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 '카'목 및 '파'목,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단,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5)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단, 변경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지급금 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 (6)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7) 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전까지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및 2종간 변경 신청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에 제4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제7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여 드립니다. 1종 및 2종간 변경 후에는 해당 종의 계약내용을 따릅니다.
- (8)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4 조 [보험나이 등]

-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5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6년 6월 11일 = 27세

-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 25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2.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초과 청약액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초과 청약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27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8 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1)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4)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회수는 최대 3회로 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

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증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납입일시증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증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7) 회사는 제41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증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제 29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이 계약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 라 합니다)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2)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회 기본보험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제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는 표준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기본적립금으로 투입합니다.

[예시] 제회 보험료를 1월 1일에 납입한 경우

- (1)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 ▶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2월 1일에 이체
- (2)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2월 10일) 승낙된 경우
 - ▶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 표준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2월 10일에 이체

-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월계약해당일-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 ②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월계약해당일이 2월 15일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1) 제2회 기본보험료를 2월 12일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제2영업일 이전 납입시)
 - ▶ 이체사유 발생일 : 2월 15일(월계약해당일)
 - ▶ 이체금액 : 납입보험료를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 (2) 제2회 기본보험료를 2월 14일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 납입시)
 - ▶ 이체사유 발생일 : 2월 16일(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
 - ▶ 이체금액 : 납입보험료를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2월 15일에서 2월 16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 (3) 제2회 기본보험료를 2월 17일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이후 납입시)
 - ▶ 이체사유 발생일 : 2월 19일(납입일+제2영업일)
 - ▶ 이체금액 :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2월 17일에서 2월 19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 위 예시는 상기의 모든 날짜를 영업일로 가정한 예시임

3.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납입일+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7월 15일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할 경우

> 이체사유 발생일 : 7월 17일(납입일+제2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 위 예시는 상기의 모든 날짜를 영업일로 가정한 예시임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19조 [청약의 철회]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제28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계약체결 후 10년에 납입일시중지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 하며, 납입중지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중지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31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 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3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2)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 적립보험료(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4)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제2영업일』
- (5)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6)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4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3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연액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제22조 [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6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7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8 조 [해지환급금]

-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감액 또는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3)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3〉 참조)에 따릅니다.
- (4) 사망보장기간의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기간의 해지환급금은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6)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39 조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4)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단, 1.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5)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 41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적립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 '버'목에 따른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2)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 42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펀드는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2)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3)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43 조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권형 펀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 및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 기타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CD, 기업어음, 기타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설정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3. 룽텀밸류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가치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매출, 이익, 자산가치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4. 액티브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내재가치가 높은 KOSPI200 종목 및 업종 대표주, 우량 코스닥 종목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5. 배당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은 현금배당이 기대되는 주식 위주로 투자합니다.

6. 스마트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기업본질 가치 분석을 통하여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신성장 미래 기업, 이익의 창출이 지속적인

로 예상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7. 글로벌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ETF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은 한국 주식에 일부 비중을 보유할 수 있음) 등에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해외 주식관련 자산(수익증권 포함)은 ETF,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 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44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43조 [펀드의 유형] 제1항에서 규정한 펀드 중 채권형 펀드를 포함하여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5% 단위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50%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80% 이상으로 합니다.

[예시]

- 40세인 계약자가 52세 연금개시를 선택한 경우 (사망보장기간 : 12년)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를 최소 70%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 40세인 계약자가 60세 연금개시를 선택한 경우 (사망보장기간 : 20년)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를 최소 50%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적립형의 경우 40세인 계약자가 50세 연금개시를 선택한 경우 (사망보장기간 : 10년)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를 최소 80%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 (4)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70% 이상
 2.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50% 이상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3년」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3년」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시]

- 40세인 계약자가 60세 연금개시, 채권형 펀드 보험료투입비율 50%를 선택한 경우, 57세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60%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아래와 같이 자동 조정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채권형 계약자적립금	60%	70%
주식형(A) 계약자적립금	30%	22.5%
주식형(B) 계약자적립금	10%	7.5%

※ 22.5% = (100% - 70%) × 30% / (30% + 10%)

※ 7.5% = (100% - 70%) × 10% / (30% + 10%)

- (7)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펀드의 변경 및 제4항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 또는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 의한 1종 및 2종간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9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8)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9)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7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45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2)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 46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당일특별계정의 총자산 - 특별계정 운용보수

제 47 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48 조 [특별계정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 또는 당사의 본사 및 지점에 게시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별표 4〉 “관련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4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50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3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5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5 조 [보험금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 (1)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3)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7 조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58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59 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예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장기간 (연금연액 지급 개시 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거치형	적립형(구좌기준)
사망보험금	사망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 계약자적립금	600만원 + 계약자적립금

(2) 연금지급기간 (연금연액 지급 개시 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액
보증 기간부 종신연금	정액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단, 10년, 15년, 20년, 100세까지 보증지급)
	3% 체증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단, 10년, 20년까지 보증지급) - 체증기간 : 10년, 20년(보증지급기간과 동일)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분할계산한 연금연액
상속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노후설계자금 (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약관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주 2) 사망보험금 계산시 계약자적립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 3)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형의 경우 연금지급형태 중 노후설계자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 4) 연금연액의 계산은 사망보장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망보장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주 5) 「공시이율」(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

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주 6)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중 3% 체증형은 체증기간 중에는 1차년도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매년 3%로 체증된 연금 연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연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7)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연액 지급개시 후 보증기간(정액형: 10년, 15년, 20년, 100세 / 3% 체증형 : 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기간까지 해당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연액 지급개시 후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해당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8)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정액형: 10년, 15년, 20년, 100세 / 3% 체증형 : 10년, 20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9) 적립형의 경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100세 / 3% 체증형 : 보증기간 10년, 20년), 확정연금(확정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중 최대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형의 경우 동시에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구성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나누어서 계산한 연금연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단,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연액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 10) 연금연액(노후설계자금 제외)의 지급주기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11)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연액(연금지급기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 12) 노후설계자금은 적립형의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노후설계자금 지급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 주 13)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 연금수익자의 노후설계자금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0~50% 범위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하며, 연금개시시점의 30일 전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후설계자금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4) (주12)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일’이란 연금지급기간 중에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단,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이 있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 15) 노후설계자금의 신청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노후설계자금 지급 이후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을 신청한 노후설계자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이후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노후설계자금 지급시 수수료는 신청한 노후설계자금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노후설계자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 16)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부록의 [표 2] 참조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9조 제2항 및 제38조 제3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연금연액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제38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제38조 제2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연액은 회사가 연금연액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주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4)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관련 법규

부록의 [표 1] 참조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조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의 정의
- 제 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6조 보험금의 청구
- 제 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 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 제 10조 회사의 보장개시
- 제 11조 특약의 보험료
- 제 12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 1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7관 기타사항 등

- 제 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 1〉 관련 법규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타인의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시행하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동종골수조혈모세포기증수술 및 동종말초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autologous)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의 공여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자가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 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이식

-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기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기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말초혈액으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0조 [회사의 보장개시]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3조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증급여금은 다른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기준통화가 미합중국 통화인 경우는 미화 2,000달러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증급여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자가(autologous)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여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 (1)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수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제1항 2호의 수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1> “관련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 회사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2)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기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8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 특약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의 청약(講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0 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러나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경우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한 때에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12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0조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3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2)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 14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관련 법규

부록의 [표 1] 참조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적용대상

제 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 6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제 7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 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4관 기타사항 등

제 9조 준용규정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대리청구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에 관한 사항

제 3 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2) 지정대리청구인의 사망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

- 어 제3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8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講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제3조 [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등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특별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상기 조문 내용은 향후 관련 법규 개정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1)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주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르덴셜생명에는 고객 중심 경영의 가치 아래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관리·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및 보험모집질서 유지 등의 목적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 제공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라이프플래너®,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생명보험협회,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당사 전화 : 대표전화 1588-3374, 080-928-3838

서면 신청 : 푸르덴셜생명 본사 고객센터센터 또는 각 Agency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당사 전화 : 대표전화 1588-3374, 080-928-3838

당사 인터넷 : www.prudential.co.kr

서면 신청 : 푸르덴셜생명 본사 고객센터센터 또는 각 Agency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당사 전화 : 대표전화 1588-3374, 080-928-3838

당사 인터넷 : www.prudential.co.kr

서면 신청 : 푸르덴셜생명 본사 고객센터센터 또는 각 Agency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신용정보(주) : 02-2144-4000 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3445-5000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www.koreacb.com

III.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IV.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 고객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및 주소

: 02-2144-2008/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21F 푸르덴셜생명 임원실

생명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 02-2262-6604/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6층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 02-3415-511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